

등록번호	복지지원과-1001
등록일자	2015.1.15.
결재일자	2015.1.15.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통합조사팀장	복지지원과장	복지환경국장	
정채수	조충현	01/15 유용렬	
협 조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연간조사 계획



복지환경국
복지지원과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연간조사 계획

국민기초수급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한 연간 조사계획 수립으로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부정수급자 및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등 수급자 보호 및 관리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을 유지해 국민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법적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2 조사 목적

- 국민기초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

3 기초수급자 현황

(단위 : 가구/명)

총수급자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2,525	3,193	2,449	3,091	76	102

4 기본 방침

- 조사내용에 따라 조사시기 및 주기를 정하여 실시
-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급권자 발굴 및 적극적인 보호 추진
- 정기적 조사로 부정수급 방지 및 보장비용 징수 결정 근거 마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주기적인 확인조사 실시
- 방문·전화를 통한 병행 조사로 부정수급 의심가구 확인조사 강화

1. 조사기간 : 2015. 02월 ~ 2016. 01월

2. 조사의 원칙

- 자산조사는 행복e음을 통해 조회(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
- 행복e음에 의한 소득재산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
입증자료 제출 시 수정결과 적용
- 조회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 '지출실태조사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소득을 추가 반영
- 방문·전화를 통한 병행조사로 부정수급 의심가구 확인조사 강화

3. 조사 대상

- 공적자료에 의하여 소득·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대상자
 - 추정소득부과자, 사적이전소득 부과자
 -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대상자
 - 조건부과 제외자, 조건제시유예자, 조건불이행자
 - 근로능력 평가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임시일용 소득자료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변동자료

4. 조사 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5. 조사의 주체

- 연간조사에 따른 변동사항 적용 및 조사 : 통합조사담당공무원
- 변동사항 및 확인조사 : 구·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보장시설수급자 : 보장시설 담당공무원

6. 연간조사계획 조사원

○ 조사원 지정

조사원	해 당 동	비 고
이혜숙	소공동, 회현동	
이윤진	약수동, 광희동	
박은지	종림동, 을지로동, 필동	
이지웅	신당동, 황학동	
박지선	다산동, 명동	
차은진	청구동, 장충동	
곽자영	신당5동, 동화동	

- 조사원 교육실시 : 2015년 2월 중(교육자 : 이혜숙 주무관)
- 교육내용 : 연간조사계획 내용, 수급자 선정기준 및 조사방법

7. 조사 시기

- 소득재산 공적자료 변경시기에 맞추어 조사 실시 (지침110쪽 참조)
- 통보시기에 따라 조사 → 행복e음에 의한 조사 : 공적자료 변동사항
- 연간조사계획에 따른 조사 :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고 소득·재산이 산정된 대상자

조사주기	조 사 대 상
연 1회 (1,672가구 / 66.9%)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대상, 추정소득, 사적이전소득 부과자
반기별 1회 (686가구 / 27.1%)	조건제시유예, 조건불이행 등 근로능력이 있으나 소득활동을 아니하는 자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된 자 및 임시일용소득자
그 기간 경과 시 (167가구 / 6 %)	조건부과 제외대상자 중 환경적응기간에 있는 자

- 부양의무자 : 행복e음에 의해 변동사항을 조사하되, 다음의 경우는 예외

조사주기	조 사 대 상
연 1회	부양의무자가 소명하여 소득에서 차감한 교육·의료비 등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음으로 구청장이 인정하여 선보호 하는 경우
확인조사 제외 (특히, 금융재산 조사 제외)	부모가 재혼하여 자녀를 부양하지 않고 있거나,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회(생활보장위원회)에서 가족관계단절로 인정하여 보장비용 징수를 면제 받은 부양의무자

8. 조사 방법

-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사 및 필요시 방문조사 병행
- 조사의 목적을 충분히 인식하여 조사대상자의 허위진술, 보장대상가구의 조사누락, 조사표 부실기재 등의 사례가 없도록 조사 및 확인에 철저
- 조사시 공부나 전산자료를 근거로 하더라도, 사실조사 결과를 중시하여 부적격자가 선정되거나 보장이 필요한 사람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 조사 시 지역주민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하여 조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함(가구특성, 실제 거주여부 확인)

9. 조사결과 처리

-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하고 공적자료 조회결과 상이한 내용이 중복 조회된 경우 본인의 확인을 거쳐 적용
- 관외거주 부양의무자는 가능한 유선 확인 후 증빙서류 우편 징구
- 조사결과를 토대로 급여의 지급여부 및 급여의 종류를 결정하며 각종 법령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일괄 결정
- 조사결과에 의해 수급자의 자격, 급여의 종류 및 급여액 변동 후 부정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등 행정절차 수행(사업팀)
-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자가 5인 이상 함께 거주하는 경우, 시설담당에 통보 - 미신고 시설 확인 시 보장시설 안내 및 입소 유도

6

보장비용 징수 계획(사업팀)

1. 징수시기 : 확인조사 및 금융재산 조회 결과 통보 후
2. 징수대상 : 부정수급자, 부양의무 불이행자
3. 징수절차

부정수급자 확인 → 보장비용징수 여부 결정 → 중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부정수급자 징수제외 결정, 부양의무 불이행자 징수 및 징수제외 결정) → 징수

7

사회취약계층 보호

1. 보호대상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 거주하는 자, 노숙인 등으로서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자

○ 교정시설 출소자

2. 보호방법

○ 최소거주기간(1개월)이상 거주확인 되는 경우 수급자격 부여

○ 주민등록 미식별대상자는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를 통한 보호

○ 교정시설 출소 후 10일 이내 급여 신청 시 출소일 기준으로 보호

8

행정사항

1. 개인정보의 보호(법 제18조 제1항) 철저

-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는 보장목적에 직접 이용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동법72조제3항)

2. 동주민센터에서는 연간 조사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3. 변동보호 대상자에 대한 민간후원 및 사례관리 의뢰

4. 연간조사 실시사항 및 급여신청 안내 등 홍보

- 인터넷 : 중구청 홈페이지 (부서 게시판)

- 동주민센터 전광판

5. 중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를 통한 연간조사계획수립 심의 : 15.02.05(목)10:00

※ 2015년 조사대상자·조사내용별 조사시기 및 주기

(단위 : 가구 / %)

구분	주 기	조사대상 및 내용	비 고
신 청 조 사	수 시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 대상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원) 신규 신청자(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 	
확 인 조 사	수 시 (공적자료 변동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e음 변동사후 자료에 의한 소득·재산 변동자 행복e음 변동사후 자료에 의한 인적 변동자 행복e음 변동사후 자료에 의한 전·출입 변동자 	매일
	반기 1회	조건제시유예자, 조건불이행자	24 / 0.95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된 자 및 임시일용소득자	662 / 26.2
	연 1 회	지출실태에 의한 소득·추정소득·사적이전 소득 부과자	1,460 / 58.46
		부양의무자 소명으로 소득 차감한 대상자	212 / 8.39
	기간경과시	조건부과 제외대상자 중 환경적응 기간에 있는자는 그 기관 경과시 소득 조사	167 / 6
보건복지부 통보시기	상반기·하반기 확인조사에 의거 행복e음으로 통보된 공적 자료 변동자료	자료에 의거	

. 끝.